

『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신용하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참가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되나,
- 의회자체 사업으로 운영시 전문성은 확보되지만 예산 편성이 행사운영비, 사무관리비 등으로 한정되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참고사항

○ 타 시군 조례운영 현황

집행기관 운영			지방의회 운영			비고
소계	광역시	기초	소계	광역시	기초	
52개	2개	50개	35개	6개	29개	

○ 청소년 기본법 제2조(기본이념)

-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·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.
 1. 청소년의 참여 보장
 2.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
 3.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
 4. 민주·복지·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